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05.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급수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 표준 급수조례를 각 지자체의 급수조례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례의 적용을 받음으로서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코자 함.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과 급수공사 신청시 제수수료를 감면하여 신규 신청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 상수도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및 신설
- 체납요금의 불합리한 승계를 제도개선하여 수도사용자들에게 부가하는 책임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25조)
-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는 기한을 정부 표준 급수조례안과 같이 3개월 이상으로 규정(안 제27조제3항)
- 중수도 관련 조항이 「수도법」에서 「하수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문 삭제
- 급수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제수수료 감면 (안 제40조)
-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시 설치비용 감면(안 제46조)

3. 조례 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

- 「수도법」 제3조제24호 · 제13조 ·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 · 제139조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하수도법」 제2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12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4조, 제35조, 제42조, 제48조, 제49조 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하고, 제2조, 제5조, 제6조, 제17조, 제42조 중 “장치”를 “설비”로 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를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구미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하며,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8.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도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9.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10.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1.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2. “공설공용”이란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본문을 같은 조 제1항으로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급수구역은 구미시의 관할구역 중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 한다.

제4조제5호,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6조의3제2항, 제8조,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를 설계에 의한 실액제로 하고, 분담금, 방수 및 관세척 손실금 등을 합산한다.

제22조의 제목 “급수의 판매금지”를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 ③ 공용 및 공설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6월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4월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제1항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중 “자연재해”를 “자연재해 및 동파”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52조 중 “수도사업소장등”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조례 제40조 관련) 제수수료

4. 제33조제2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급수관구경 32m/m 까지 14,0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21,000원

단, 수도미터기 시험 수수료가 변동될 시에는 시험 실시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5. 제44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까지 20,000원

급수관구경 50m/m이상 50,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이하“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구미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 ----- -----.	• 법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수선·철거 및 수전분리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저수조 및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생략)	제2조(정의)----- -----.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 급수설비----- -----. 3. “흡수정등의 설비”-----급수설비----- -----설비----- -----. 4. (현행과 같음)	• 법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5. “수요가·수용가 및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으로 수도물의 공급을 받는 자를 말한다. 6. “중수”라 함은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을 말한다. 7.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관시설 및 이용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u><신설></u>	5.----- ----- 급수설비----- ----- -----. <u><삭제></u> <u><삭제></u> 8.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도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9.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10.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1.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2. “공설공용”이란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 및 건축물을 말한다.	• 하수도법 이관으로 삭제 • 하수도법 이관으로 삭제 • 법 용어에 맞게 관련 조문 신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구미시의 관할구역중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 이외 지역 중 칠곡군(제3공단 일부포함), 김천시 일부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 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함 5. 보조 급수장치 : 전용급수장치의 보조시설로서 급수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구미시의 관할구역 중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 1. 전용 급수설비 : -----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 급수설비. ----- <삭 제>	• 정부 표준 급수조례 (안)에 따름 • 법 개 정 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 수도검침사업종구분 상호혼용의 우려가 있어 삭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 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생략)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 1. -----급수설비-----. 2. -----급수설비----- 3. -----급수설비----- 4. -----급수설비-----설비----- 5. (현행과 같음)	•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생략)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공사비 납부와 동시 징수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 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설계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취소시에도 이를 징수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장치등의 설치 및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1. ~ 2. (생략)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④ -----설비----- ⑤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 수수료 감면 •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3. 수도사용에 필요한 장치를 하지 않으면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특수시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자 ⑥ (생략) 제6조의2(전용급수장치의 설치) ①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를 설치한다. 1. ~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가 별도의 급수장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옥내 배관시설(물탱크 및 저수조시설포함)이 완전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용 급수장치의 시설용량 범위 안에서 보조 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옥내 배관시설이 상호 혼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3(주상복합건축물 등의 급수장치 설치) ① 시장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주거상가 복합건축물 또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전용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전용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보조 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생략)	3. ----- 설비----- -----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전용급수설비의 설치) ① -----급수설비-----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6조의3(주상복합건축물 등의 급수설비 설치) ①----- ----- -----급수설비----- -----.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 수도검침사업종구분 상호혼용의 우려가 있어 삭제 •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 수도검침사업종구분 상호혼용의 우려가 있어 삭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등) ① -----급수설비----- -----. ② (현행과 같음)	•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제8조(중수도 설치의 목적 및 책무) ①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수도에 설치·관리 및 요금 감면, 기타 제반여건을 규정하여 그 적절한 운영에 의하여 용수수급 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며,중수도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수도의 설치·관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수돗물의 합리적인 이용에 노력한다.	<삭제>	• 하수도법 이관으로 삭제
제9조(중수도 설치 대상등) ① 수도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수도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에 적용한다. ② 「수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함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관객1,000석 이상의 영화관 및 음식점 또는 도서관,실내수영장,월50,000m³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빌딩 및 공장등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삭제>	• 하수도법 이관으로 삭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③ (삭제 2007.01.11) ④ 중수도의 시공업자 자격,설치신고,관리,사용용도,수질기준 및 검사,요금감면,수량인정,수도미터기 설치등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제49조제2항에 의한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생략) ③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진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설계수수료,자재비,시공비,도로복구비를 설계에 의한 실액제로 하고,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사재 검사수수료 분담금,방수 및 관세척 손실금등을 합산한다. ② ~ ③ (생략)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 급수설비----- ----- -----. ② (현행과 같음) ③ 급수설비----- ----- ----- ----- -----.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시공비,도로복구비를 설계에 의한 실액제로 하고, 분담금, 방수 및 관세척 손실금 등을 합산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 제수수료를 감면하여 신규 급수신청자 경제적 부담 경감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5조(시설 분담금) ① 전용<u>급수장치</u>와 사설공용 <u>급수장치</u>의 신설 또는 개조, 수전분리(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설공용의 <u>급수장치</u>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⑤ <u>급수장치</u>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대단위 아파트, 다세대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산정하되, 이미 설치된 급수관별 시설분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흡수정등의 장치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등은 흡수정등의 <u>장치</u>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등의 <u>장치</u>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장이 직접 시행한 흡수정등의 <u>장치</u> 설치 및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시설 분담금) ① 전용<u>급수설비</u>----- <u>급수설비</u>-----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급수설비</u>----- -----. ④ (현행과 같음) ⑤ <u>급수설비</u>----- ----- ----- ----- ----- -----. 제17조(흡수정등의 설비설치) ① ----- <u>설비</u>----- -----. ② ----- <u>설비</u>----- ----- -----. ③ ----- <u>설비</u> ----- -----.	•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사용하도록 하되 사용량에 대하여는 인정부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1조(신고) ① (생략)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 5. (생략) 6.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7. (생략) ② (생략) 제22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 급수설비-----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신고) ① (현행과 같음) 1. 급수설비----- 2. 급수설비----- 3. ~ 5. (현행과 같음) 6. 급수설비-----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삭 제〉 ②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용 및 공설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 수도법에 정하고 있어 삭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4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4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 -----급수설비-----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제24조2(급수장치의 소유권) ① 급수장치중 시의 소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급수장치중 수용가의 소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제24조2(급수설비의 소유권) ① 급수설비----- -----. 1. ~ 3. (현행과 같음) ② 급수설비----- -----. 1. ~ 2. (현행과 같음)	•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자는 건물 또는 토지 매매계약시 전 소유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부 표준 급수조례(안)에 따름
제27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할 경우 구경별정액 요금을 과징한다.	제27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급수설비----- ----- -----.	•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② (생략)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수도사용자등의 <u>6월이상</u> 소재 불명일 때 2.정당한 사유없이 <u>4월이상</u>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 4. (생략)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손실이 되었을 때 6. ~ 7. (생략) ④급수장치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오염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생략)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급·배수관에서 <u>급수장치</u>를 설치한 후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 -----<u>급수설비</u>----- ----- 1.----- <u>3개월 이상</u>----- ----- 2.-----<u>3개월 이상</u>----- ----- 3. ~ 4. (현행과 같음) 5.----- ----- <u>급수설비</u>----- ----- 6. ~ 7. (현행과 같음) ④<u>급수설비</u>----- ----- ----- ----- -----.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u>급수설비</u>----- ----- -----. ③ (현행과 같음)	• 정부 표준 급수조례(안)에 따름 •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25일로 하여 징수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 ----- ----- ----- ----- 급수설비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제35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제35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 ----- ----- 급수설비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제41조(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 ① (생략) 1. ~ 2. (생략) 3.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시장에게 신고한 자 4. ~ 8. (생략) ② (생략)	제41조(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하수도법 이관으로 삭제
제42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①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 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토지 또는 건물소유주에게 이의 개수, 통합 또는 구경절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42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① ----- ----- 급수설비 ----- ----- 설비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44조(정수처분) ① (생략) 1. ~ 7. (생략)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 12. (생략) ② (생략)	제44조(정수처분)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u>〈삭제〉</u> 9. ~ 12.(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조례22조 판매규정 삭제에 따름
제46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u>자연재해</u> 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제1항의 징수하여야 할 비용 중 계량기 설치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6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u>자연재해</u> 및 동파----- ----- ----- ----- -----	• 동파로 인한 교체시 설치비용 감면
제48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경우에는 「 <u>행정절차법</u> 」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동일세대를 포함한다)로 <u>급수장치</u> 를 신설할 수 없다.	제48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질서위반행위규제법</u> 」 제16조의 규정-----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u>급수설비</u> -----	•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49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51조(이의 신청) ①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수수료·과태료·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략) 제5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도사업소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 급수설비----- -----급수설비-----. ② ----- ----- 급수설비----- ----- -----급수설비----- -----. ③ ----- ----- 급수설비-----. 제51조(이의 신청) ① ----- ----- ----- ----- ----- -----.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권한의 위임) ----- ----- ----- 상하수도사업소장-----.	•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별표 5] (조례 제40조 관련) 제수수료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1.제6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의 2%로 하되, 15,000원 이상으로 한다.	<u>〈삭 제〉</u>	• 제수수료를 감면하여 신규 급수신청자 경제적 부담 경감
2.제13조제1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15,000원	<u>〈삭 제〉</u>	
3.제13조제1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설계금액의 100분의 2	<u>〈삭 제〉</u>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6. 급수공사(신설, 개조, 수선) 신청 수수료 건당 5,000원	<u>〈삭 제〉</u>	

관 련 법 령

◎ 수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제13조 (영리행위 금지 등)

- ①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 할 수 없다.
-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 (공급규정)

-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광역상 수도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5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도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요금)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

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및 자본비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제26조 (중수도의 설치)

①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재이용수를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물

②중수도의 시설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량의 기준,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는 중수도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